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1-74
----------	-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. 8. 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# 1. 의결주문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」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# 2. 제안이유

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규정상 미비점 등을 정비·보완하고자 조례 일부 개정함.

### 3. 주요내용

- 가.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」 개정사항('20.12.22) 조례에 반영
- 나.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감경대상 확대 조항 신설(안 제28조제4항제5호 및 제28조제5항)
- 다. 공유재산 사용료·대부료 조정범위 확대(안 제30조)
- 라.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의 범위에서 비소모품 취득단가 기준을 적정단가로 상향조정(별표2)

### 4. 주요 토의과제

없음

## 5. 참고사항

### 가. 관계법령

- 1)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2)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
- 3) 「지방자치단체 물품관리 운영기준」 (2018. 7월 행정안전부)

나.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### 라. 기타사항

- 1) 입법예고 : 2021. 5. 27. ~ 6. 16. (제출된 의견 없음)
- 2)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자율평가 결과 : 원안동의
- 3) 기획예산과의 행정규제심사 검토결과 : 원안 동의
- 4) 여성가족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해당없음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 
제23조 중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”을 “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”으로 한다.

제2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”을 각각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”를 “영 제17조제7항제2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”로 하며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「고용보험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포구의 귀책사유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,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9조제4항 본문 중 “관리하되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75

조제1호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”를 “관리한다”로 한다.

제30조 중 “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”를 “전부 감액 조정할 수 있다”로 한다.

제31조제4항을 삭제한다.

제34조제3항 중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6항”을 “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3제3항”으로 한다.

별표2 2.가.(1) 중 “10만원”을 “30만원”으로 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3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이 조례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시설운영자(이하 “외국인투자기업 등”이라 한다)란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2조제1항제6호 및 제7호, <u>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항</u>에서 정한 기업 등을 말한다.</p>	<p>제23조(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)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9항</u>----- ----- --.</p>
<p>제28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<u>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</u> 및 영 제35조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 <p>② <u>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9항</u>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·수익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.</p> <p>1. ~ 3. (생략)</p>	<p>제28조(대부료 등의 감면) ① <u>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의2제3항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3. (현행과 같음)</p>

③ (생략)

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행령 제17조제7항제1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감경할 수 있다.

1. ~ 4.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29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

① ~ ③ (생략)

③ (현행과 같음)

④ -----  
----- 영 제17조제7항제2호  
및 제35조제2항제2호-----  
-----  
-----.

1. ~ 4. (현행과 같음)

5. 「고용보험법」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

⑤ 영 제17조제7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라 마포구의 귀책사유로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받은 재산의 사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. 다만 법 제21조제4항제2호 및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기간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.

제29조(전세금 납부방법의 대부)

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④ 제3항에 따라 징수한 전세금은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 제40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으로 관리하되, 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회계 규칙」 제75조제1호에서 규정한 보증금의 예를 준용한다. 다만, 전세금의 이자 수입은 마포구 수입으로 한다.

⑤·⑥ (생략)

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영 제16조 및 제34조에 따라 해당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대부료보다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, 그 증가한 부분 중 100분의 5를 초과한 증가분에 대하여 감액조정하는 감액율은 100분의 70으로 한다.

제31조(대부료의 납기) ① ~ ③ (생략)

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미 부과한 대부료 및 앞으로 부과할 대부료의 납부기간을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따로 정할 수 있다.

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·② (생략)

④ -----  
-----  
----- 관리한다.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⑤·⑥ (현행과 같음)

제30조(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) 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전부 감액 조정 할 수  
있다.

제31조(대부료의 납기) ① ~ ③ (현행과 같음)

<삭제>

제34조(매각대금의 분할납부 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6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사업목적상 일반재산이 필요한 때에는 매각대금을 20년 이내의 기간으로 매각대금의 잔액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.

③ 「외국인투자 촉진법」 제13조제3항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

[별표2]

**물품의 품종·상태구분**

1. 물품의 분류

가. 비품 :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.

나. 소모품 :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.

2. 품종구분 기준

가. 비품

(1)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, 취득단가 **10만원**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

(2)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

나. 소모품

(1)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(예: 약품, 유류, 수선용 재료 등)

(2)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(예: 시험용품, 사무용품, 공구 등)

(3) 다른 물품의 수리, 완성제작(생산)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(예: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 등)

3. 물품상태 분류기준

가. 신품 :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

나. 중고품 :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

다. 요정비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

라. 폐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

[별표2]

**물품의 품종·상태구분**

1. 물품의 분류

가. 비품 : 비품이라 함은 그 품질현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한다.

나. 소모품 : 소모품이라 함은 그 성질이 상함으로써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과 공작물 기타의 구성부분이 되는 것을 말한다.

2. 품종구분 기준

가. 비품

(1) 내용 연수가 1년 이상이고, 취득단가 **30만원** 이상의 물품으로서 소모성 물품에 속하지 아니하는 물품

(2) 기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물품

나. 소모품

(1)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(예: 약품, 유류, 수선용 재료 등)

(2) 내용연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물품(예: 시험용품, 사무용품, 공구 등)

(3) 다른 물품의 수리, 완성제작(생산)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물품(예: 수리용 부속품, 생산원료, 재료 등)

3. 물품상태 분류기준

가. 신품 : 신품 및 신품과 거의 동일한 물품

나. 중고품 : 사용된 물품으로서 수리를 요하지 아니하는 물품

다. 요정비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경제적인 물품

라. 폐품 :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물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 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 - 해당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「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」 제12조제2항제1호에 해당

3. 미첨부 사유

-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,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

4. 작성자 : 기획재정국 재무과 손경화 (☎8603)